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254 발의연월일: 2025. 2. 18.

발 의 자:김정재・이달희・김선교

이헌승 · 김미애 · 조지연

김성원 · 윤한홍 · 서일준

박대출 • 이상휘 • 김기웅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「형법」상 내란의 죄·외환의 죄, 「군형법」상 반란의 죄·이적(利敵)의죄, 「국가보안법」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,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피해 사건의 가해 교사의 경우 살인 등 중범죄자임에도 연금 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어 최대 50%의 감액 처분만 받고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.

이에 전·현직 공무원이 「형법」 제250조 및 제291조의 살인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범하거나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을 위반 함으로써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6 5조).

법률 제 호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제4항 중 "재직 중의 사유로 「형법」"을 "전·현직 공무원이 「형법」"으로, "제외한다)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"을 "제외한다), 「형법」 제250조 및 제291조의 살인죄를 비롯한 강력범죄를 범하거나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65조(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65조(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) ① ~ ③ (생 략) 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재직 중의 사유로 「형법」 ④ 전·현직 공무원이 「형 제2편제1장(내란의 죄), 제2장 (외환의 죄), 「군형법」 제2편 제1장(반란의 죄), 제2장(이적 의 죄), 「국가보안법」(제10조 는 제외한다)에 규정된 죄를 ----<u>제</u>외한다),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「형법」 제250조 및 제291조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 의 살인죄를 비롯한 강력범죄 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 를 범하거나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을 위반하여 금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 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 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